

[세이브더칠드런] 저소득가정아동(위기아동)지원사업 안내

1. 지원대상

-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 아동
 - ※ 만 18세인 경우, 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
 - ※ 이주배경아동, 북한이탈주민, 난민가정아동 포함. 단, 의료지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
- 다음의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대상자로 선정 가능

【 소득 기준 】

- 법정 저소득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
- 일반 저소득: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 [표 1] 참고

【표 1】 2022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

(단위: 원)

가구 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	
기준 중위소득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	8,654,180	
중위 80%	1,555,850	2,608,000	3,356,000	4,097,000	4,820,000	5,526,000	6,224,000	6,923,000	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직장	-	91,563	118,045	144,572	169,210	193,882	219,871	244,759
	지역	-	54,782	109,394	140,095	172,486	205,006	238,263	269,412
	혼합	-	92,499	119,032	146,207	171,393	196,955	223,722	249,469

- ※ 가구원 범위: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(동거인, 현역군인,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)
- ※ 건강보험료 산정방법: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.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,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

2. 지원 항목 및 금액

영역	항목	내용	금액
생계	생계비	-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, 동절기 난방료 및 방한용품 구입비, 하절기 냉방용품 구입비, 단전. 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	최대 200만원
	교육비	-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-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, 교복구입 및 기숙사 비용 등,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- 아동 돌봄 혹은 진로, 진학을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사교육비	최대 200만원

주거	주거환경 개선비	- 누수차단, 노후주택정비, 벽지 및 장판 교체, 욕실 및 화장실 설치, 필수 가전 및 가구 설치,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,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	최대 300만원
	임시 주거비	- 강제퇴거, 자연재해 등으로 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, 여관, 무보증월세 등 -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주거 유지가 불가한 경우 월세 체납금	최대 200만원
의료	의료비	- 병원 검사 및 치료,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/정신적 치료비, 외래비, 약제비 - 단순 예방적 차원의 검사/치료, 미용목적의 치료 는 제외 -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료비 지원	최대 300만원
	심리 치료비	- 심리검사, 심리상담, 심리치료(놀이치료, 미술치료등) -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	최대 200만원
기타	일반 사례관리비	- 아동사례관리 시 필요한 소액비용 지원(교통비, 간식비 등)	최대 30만원

※ 최대 2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

※ 최대 3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

3. 지원 절차



4. 지원 신청

- 사례관리기관은 하기 '제출서류' 구비하여 지부에 제출

구분	제출서류
공통	① 위기아동지원 신청서(서식1) ② 아동·가정용 사업참여동의서(서식2), 사례관리기관용 사업참여동의서(서식3)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4) ④ 주민등록등본 (외국인등록증, 여권, 출생등록증, 난민관련 서류 가능) ※ 개인식별고유번호는 삭제 후 제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) ※ 개인식별고유번호가 노출된 채 제출하였을 경우 제출서류 일괄 반송 처리 ⑤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※ 각종 사진, 관공서 발급 서류(ex.사망/실종 신고서, 공과금 미납내역 등), 진단서 등 ⑥ 아동안전보호점검표(서식5) 2부 ⑦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따른 사명선언문

소득 증빙 서류	기초생활수급대상	- 수급자 증명서
	차상위복지급여 대상	-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관련 증명서 (아래 서류 중 1개)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,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 돌봄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자 증명서
	일반 저소득 대상	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불가 시 소득확인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(통장내역 확인 가능)
기타 사항	- 주거영역 지원 시, 주거확인서 제출 (전월세계약서, 등기부등본, 무상거주확인서 등) - 기타 일반사례관리비 지원 시, 공통서류 ⑤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사례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- 사례에 따라 서류 일부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, 해당 지부에 대체 서류 문의	

5. 지원 보고

- 지원 완료 후 세이브더칠드런 지부에 하기 제출서류 제출
- 잔액 발생 시 즉시 해당 지부에 반환

제출서류	보고시기
- 결과보고서 (서식6) - 영수증빙 (기관 지출품의 및 증빙서류 일체) 및 사진자료 - 만족도조사 (서식7) - 아동안전보호점검표 (서식5)	-사례관리 기관별 별도 안내 예정

6. 기타 문의

지역	담당 센터명	담당자	연락처	기관홈페이지
전북	전북 아동권리센터	이희수 사원	063-254-1177	http://hnchild.sc.or.kr/
대전/세종/충남/충북	대전 아동권리센터	이소정 사원	042-826-0161	
광주/전남/제주	광주 아동권리센터	진은이 사원	062-942-1177	

*사업 신청 양식은 기관 홈페이지(<http://hnchild.sc.or.kr/>) '공지사항' 에서 다운로드 가능.

/끝/